

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. 6. 25.

부천시 원미구 중4동장



- 공 고 명: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5. 6. 25. ~ 2025. 7. 9.
- 공시송달 대상

대 상 자		장애 유형	반송일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김**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***	**	2025.6.25.(등기우편)	폐문부재 실거주확인불가

-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
 - 제 출 처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행정복지센터
 - 제출기한: 2025년 7월 28일까지
 - 주 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15
 - 문의사항: 032-625-5815
 - 구비서류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
※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유의사항: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.